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질의서

■ 취지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인권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해왔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한국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인권 상황을 이대로 둘 것인지, 다시금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도출하고 권고하는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할 여덟가지의 인권 의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후보에게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입장과 추진의사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인권문제 해결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 질의서 답변방법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은 첨부문서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8대 인권 의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문서를 확인하시고, 각 인권의제에 대한 추진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아래의 표에 밝혀주시시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과 이견이 있거나, 각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추가 공약, 내용 또는 입장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답변 마감일

2017년 4월 13일(목) 12:00까지

■ 답변 공개방법

보내주신 답변 내용은 시민들이 각 후보의 인권 정책과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의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amnesty.or.kr),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응답하지 않은 결과도 사유와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담당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덕현 이슈커뮤니케이션 간사 (polarbear@amnesty.or.kr, 070-8672-3391)

1.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긴급성을 가진 사안으로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물대포의 사용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법집행공무원과 그 상급자를 지체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물대포 사용 관련 현행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도록 할 것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하고, 특히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법에 명문화할 것			
집회 관리의 전반적 접근방식을 평화적 집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사용을 규율하는 법규가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이 그에 따라 적절히 훈련받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촉진할 정부 당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인 집시법 개정예 착수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표현의 자유 보장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여 한국의 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거나 괴롭힘이나 의사·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만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한국은 전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가장 많이 수감된 나라이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장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하고, 향후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지 말 것			
양심에 따른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것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각 개인이 병역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완전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용허가제 관련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더 큰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비자 연장/갱신 신청이 제한 또는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것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등에 대한 권리가 노동 분야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다음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고 그 이행을 보장할 것: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비호신청자와 난민 보호

국제앰네스티는 난민과 비호신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비호신청자와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비호신청자가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금이 정당한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접근권과 의료 조치를 받을 권리, 인도적인 구금환경을 보장할 것			
유엔난민기구(UNHCR)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인 책임분담 시스템에 동참할 것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비호신청자 및 난민의 권리 보호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보 문제만 부각되어 있는 사이, 이산가족, 강제실종,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 많은 인권문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과 인권 대화를 확장하고, 한반도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한반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향후 남북대화에서 인권이 정기적인 핵심 의제가 되도록 보장할 것			
북한이탈주민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구금은 가능한 최단기간 내로 제한하고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또, 특히 구금 및 신문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이 선택하는 변호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 구금 시설 외부에 있는 이들과의 접촉이 즉각적으로 허용되고 가족 및 친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한반도 인권 문제 해결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국제앰네스티는 성소수자(LGBTI)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성소수자 공동체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추진할 것			
민족, 성별, 실재나 외견상 보이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혐오 발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독립전문가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사형제도 폐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위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법적 폐지를 이끌어 낼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하도록 추진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사형제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